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3. 13) 상정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3.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지식산업과장 조 제 형)

가. 제안이유

- 현 조례에 의한 “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국한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문·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소기업 유치·육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를 고부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벤처기업 유치·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신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업, 기타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3조 내지 제1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 2007년까지 한시적인 것이 벤처기업임
○ 벤처기업의 현황은	○ 관내 170여개 벤처기업이 있고, 9,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음
○ 기존 조례개정 사유는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의견 수렴 및 자문과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과 같이 수정할 용의는	○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91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회)

제안년월일 : 2003년 3월 18일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문구상의 중복 문구를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만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행,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문구 형식상 중복이 됨으로 문구수정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함. (안 제7조제1항)
- 유사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자 제13조의 "다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5호에 "만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5호는 제6호로 변경.(안 제13조, 안 제14조제5호 및 제6호)
- 당연직 위원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아 당연직 위원을 명시 (안 제15조제2항)
- 각 위원회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확한 위원회의 근거 명시 (부칙 제2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중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한다.

제13조중 “다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4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만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행·재정지원

제15조제2항중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부시장,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한다.

부칙제2항중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전의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3조의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로 한다.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 2."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3."창업보육센터"라 함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공용장비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4."벤처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만화산업종합 지원센터 및 기타 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벤처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시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 3.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 4.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 5.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 ①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부천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②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한 기한이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모집공고)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부천시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허가의 절차등)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 및 시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제9조(사용료등) ①시 소유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천시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주기업 지원사업
2. 기업애로상담, 정보제공
3.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4. 기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

③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며, 시장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나 촉진지구내에 있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대하여 행정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1.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 2.신제품 개발등의 연구개발사업
- 3.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자의 선정
- 2.중소·벤처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3.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4.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 5.기타 중소·벤처기업의 유치·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1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되, 입주기간은 기체결된 기간으로 하며,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